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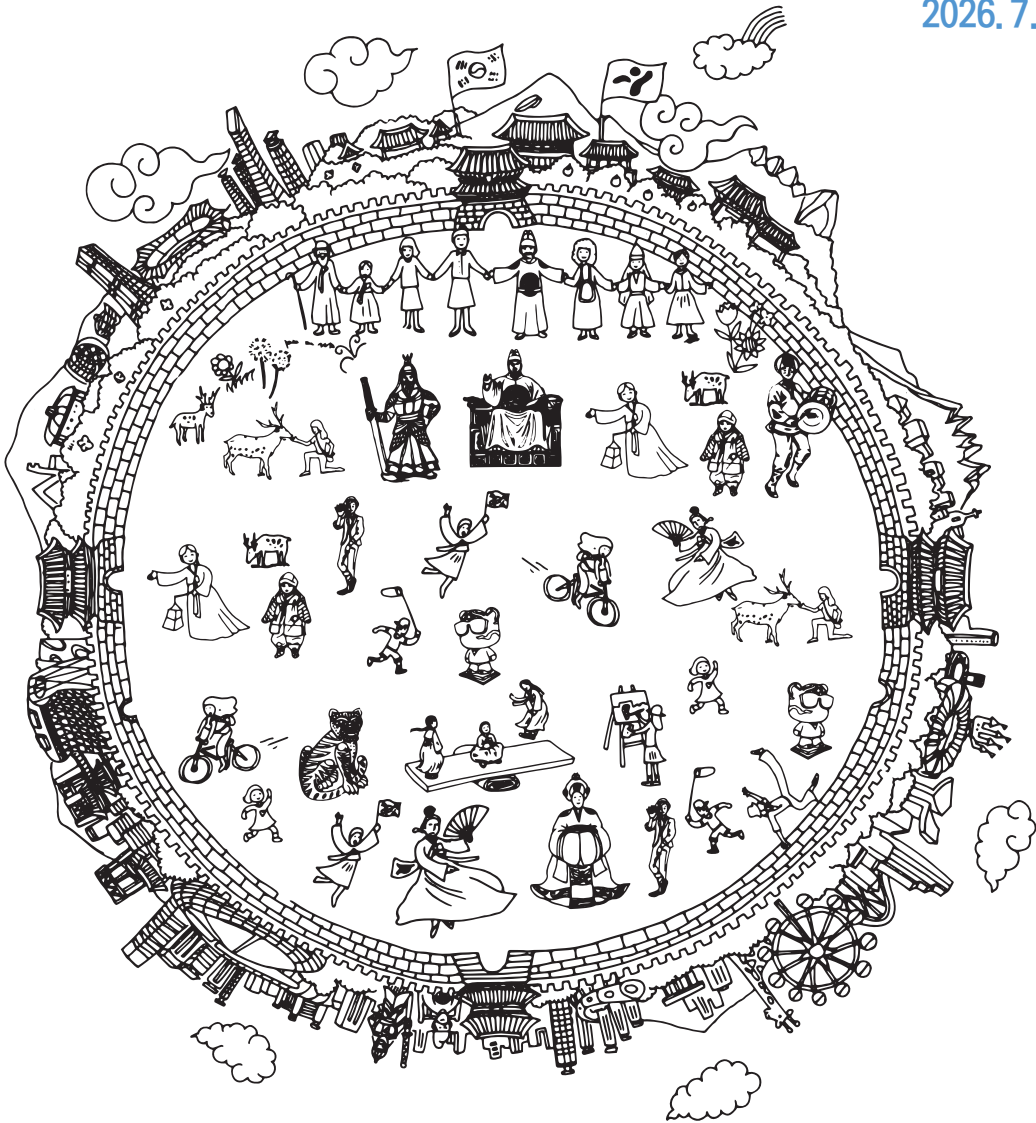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67호
2026. 7. 27.(월)



목 차**◆ 자치법규 등****[규 칙]**

제4789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790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79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제479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3
제479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자치법규 등**[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789호****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장을 제외한”을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훈련 담당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현행 규정이 서무·회계 담당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게도 자격요건을 일률 적용하고 있어 직무 성격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있으므로,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 적용 대상을 전문직업상담자 및 교육·훈련 담당자로 한정하여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정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축소(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90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택시운송사업별 면허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신고 요건(제3조제2항 관련)

1. 공통요건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신고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나. 사업구분 변경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2. 개별요건

-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모범형, 대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 1) 사업구분 변경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감차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그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나.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대형(승합)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 1) 이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 인정하는 교육 수료

[별표 2]

택시운송사업별 면허 조건(제3조제3항 관련)

가. 중형택시

1. 인가일(양수) 및 수리일(면허전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중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3.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면허 양수일로부터 5년간 본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제조 2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8. 경유택시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5년 또는 240,000km로 규정하고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현재 시판되는 신차 중 이를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충당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9. 중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앱미터기(GPS 기반 택시미터) 및 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10. 중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본 면허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및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900cc 이상 제조 2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5. 경유택시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5년 또는 240,000km로 규정하고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현재 시판되는 신차 중 이를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충당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6.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앱미터기(GPS 기반 택시미터) 및 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7.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및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대형승용택시

1. 대형승용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제조 2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5. 경유택시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5년 또는 240,000km로 규정하고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현재 시판되는 신차 중 이를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충당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6. 대형승용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앱미터기(GPS 기반 택시미터) 및 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7. 대형승용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및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대형승합택시

1. 대형승합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택시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되,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제조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5. 대형승합택시는 예약·호출·대기·배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앱미터기(GPS 기반 택시미터) 및 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 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6.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개의 호출중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7. 대형승합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및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고급택시

1. 고급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택시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되,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2,800cc 이상의 제조 2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 당해 사업용 차량(모범·대형승용택시)을 고급택시로 변경 시 차량충당연한(2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앱미터기(GPS 기반 택시미터) 및 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 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6.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개의 호출중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7. 고급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및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이 전면 신고제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환요건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 및 별표)

- 1) ‘인가’ → ‘신고’

나.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 완화 (별표)

- 1) 무사고 요건 삭제
- 2) 처분이력 요건 정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5항

- 개인택시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이력 요건 삭제
- 법인택시 :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이력 요건을 1년으로 완화

◆ 서울특별시규칙 제479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용기간) ①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시용기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과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 적합성 등을 정식 임용 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자에 대한 3개월간의 시용기간 운영 근거 신설(제4조의2)

◆ 서울특별시규칙 제479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범납세자의 선정)

-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등의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할 세액을 2회 이상 나누어 부과 또는 납부하는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 인원은 150명 이내로 한다.
-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0년 이상 장기 모범납세자
 2.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8년간 서울특별시세 등의 납부세액이 자치구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
 3. 기부, 봉사활동,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자 등
- ③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심의 등)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모범납세자의 지원)

-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유공납세자의 지원)

-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5조제3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기간에 따른다.
-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 ④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의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면서 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유공납세자인 차량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
 - 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차량
- ⑤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심사청구)

-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모범납세자 자격 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현황과 인적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납세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와 그에 따른 혜택은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서

피 추 천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추
천
사
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공적조서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연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의청구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 납세자(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제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등록자번호			
주소(사업장)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 분	성 명	모범납세자 선정		서명 또는 인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 의 결 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번 호 :

유효기간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번호 :

위의 사람(법인)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자격증명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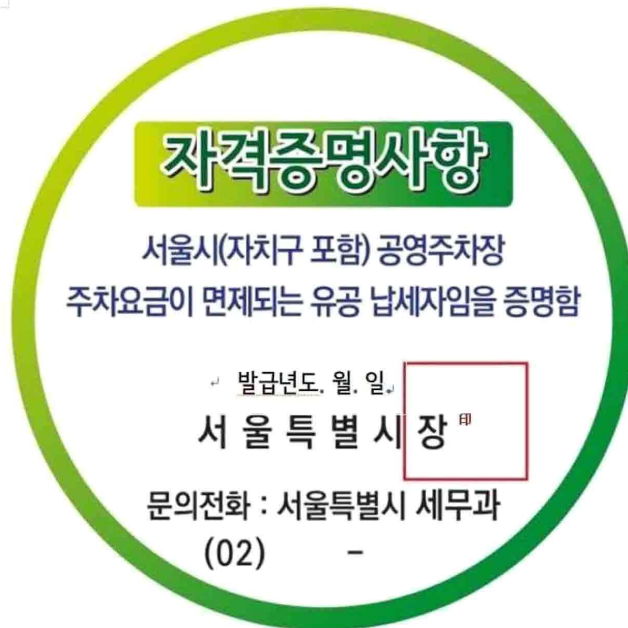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혜자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청구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	
첨부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수신자

제 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청 구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심 사 결 정 내 용			

끝.

서울특별시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현행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의 체계를 선발 및 지원 → 심의 순에서 선정 → 심의 → 지원으로 업무 순서에 맞게 재정리
- 나. 유공납세자 추천 기준 명확화 및 전자납세자 삭제(제3조)
 - 자치구별 유공납세자 추천 시 장기모범납세자, 고액모범납세자, 지역사회발전 공헌자 등 구체적 기준 신설함.
 - 조례의 전자납세자 규정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도 삭제함.
- 다.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 차량 확대(제6조)
 - 현재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함.
 - 개인유공납세자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차량 등 혜택 적용의 범위가 넓으나 법인은 소유 및 리스한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한정되어 대표자 명의 차량도 가능하도록 추가함.
- 라. 현행 시행규칙에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별지 서식 일제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79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를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대관료 반환(제5조 관련)

1. 대관료 반환기준

구분 (해지시점)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364일전	대관시작일로부터 121일~180일전	대관시작일로부터 31일~120일전	대관시작일로부터 30일전
반환 규정	뮤지엄 외 대관공간	100% 반환	선금의 50% 제외하고 반환	선금 및 중도금 제외하고 반환	대관료 총액의 75% 제외하고 반환
	뮤지엄	선금의 50% 제외하고 반환	선금 제외하고 반환		

※ 단 디자인랩의 경우 대관 시작일로부터 7일 전 50% 반환, 7일 미만은 반환 안함

※ 뮤지엄은 2~3년 전부터 공고를 통해 대관 신청을 받고 있어 대관 시작일 기준 1년(365일) 전 취소 시 전액 반환기준 적용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디자인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대관료 반환기준을 일자별·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반환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대관 취소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DDP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관 취소·반환 기준 세분화(제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를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 신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